

#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11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9. 24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9. 25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0. 24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의 경리관(보건소장)과 본 조례의 기금운용관(부군수)이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출납사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음.

### 3. 주요골자

-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종전 부군수에서 부서의 장(보건소장)으로 함.(안 제4조제3항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1년 4월 20일 고성군조례 제1692호로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관리운용관의 회계관직을 지방재정법과 고성군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관직보다 상위 직급을 지정하였음.
- 출납사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운용관을 관계 법령과 일치되게 지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2001. 10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